

#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46
----------	------

제출연월일 : 2017. 11. .

제 출 자 : 하 남 시 장

## 1. 제안이유

- 각종 개발사업을 총괄 추진하고 있는 한시기구인 행복도시사업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부칙에 규정한 4급 한시기구 ‘행복도시사업단’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 5.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없음

## 6.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 7. 입법예고 결과 : 해당없음

가. 법적근거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4호 및 「하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제1항제3호

나. 사 유 :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8. 부서협의 결과 : 의견없음**

가. 규제개혁관련협의 : 해당없음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없음

**9. 참고사항 : 덧붙임**

○ 한시기구(행복도시사업단) 연장 직급책정 협의결과 알림(경기도 공문)

**10. 관련부서 : 경기도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하남시 조례 제1264호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10조에 의한 한시기구인 행복도시사업단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기획예산담당관
입 안 자	부서장 직위·성명	기획예산담당관 이광범
	팀장 직위·성명	조직성과팀장 박종현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조일수 (790-5543)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하남시 조례 제1264호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p> <p>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u>제5조의2의 개정규정</u>에 의한 한시기구인 행복도시 사업단의 존속기한은 <u>2017년 12월 31일</u> 까지로 한다.</p>	<p>하남시 조례 제1264호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p> <p>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u>제10조</u> ----- ----- ----- <u>2020년 12월 31일</u> 까지로 한다.</p>

# [관련공문]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



## 경 기 도



수신 하남시장(기획예산담당관)  
(경유)

제목 하남시 한시기구(행복도시사업단) 연장 직급채정 협의결과 알림

1. 관련 : 하남시 기획예산담당관-12619(2017.9.7.)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거 한시기구 연장 직급채정 협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기준인건비 준수 및 자치법규 개정 등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의결과 : 한시기구 연장 협의(4급, 3년)
  - 한시기구 : 행복도시사업단 (4급)
  - 존속기한 : 2018.1.1. ~ 2020.12.31. (3년)
  - 기구표



3. 아울러, 향후 사업 지연 등으로 기한(3년) 내 완료하지 못하는 사업은 상시기구로 전환 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끝.

경 기 도 지 사



주무관 김재환 조직팀장 류호국 기획담당관 전결 2017. 10. 27.  
허승범

협조자

시행 기획담당관-14066 (2017. 10. 27.) 접수 기획예산담당관-15728 (2017. 10. 27.)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3가, 경기도청) / <http://www.gg.go.kr>

전화번호 031-8008-4094 팩스번호 031-8008-7239 / [micky6@gg.go.kr](mailto:micky6@gg.go.kr) / 대국민 공개

행복한 일자리 경기도가 만들어 갑니다